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영업시설 전부 철거로 인한 영업폐쇄 처분 후  
영업신고의 제한 예외 규정 마련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674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2 |
| 1. 영업시설 전부 철거로 인한 영업폐쇄 처분 후 영업신고의<br>제한 예외 규정 마련 ..... | 2 |
| 2. 위생용품위생감시원 규정 등 정비 .....                             | 6 |



## I. 개요

### 1. 정부안(의안번호 제1674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7. 12.
- (3) 회 부 일 : 2024. 7. 15.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신고 제한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식품위생법」 제33조를 준용하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이해를 돕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제도를 위생용품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영업시설 전부 철거로 인한 영업폐쇄 처분 후 영업신고의  
제한 예외 규정 마련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행정 제재처분의 회피 목적 없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의 제한기간 없이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조 단서).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영업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br>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br>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br>를 할 수 없다. <단서 신설>     | 제5조(영업신고의 제한) -----<br>-----<br>-----<br>. 다만, 영업시설 전<br><u>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u><br><u>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철거한</u><br><u>경우는 제외한다)</u> 하여 법 제17조<br><u>제1항제1호의 사유로 영업소 폐쇄</u><br><u>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u><br><u>아니하다.</u> |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br>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br>전에 같은 장소에서 폐쇄명령을<br>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br>하려는 자 | 1. · 2. (현행과 같음)                                                                                                                                                                                                   |

|                                                                                                     |  |
|-----------------------------------------------------------------------------------------------------|--|
|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로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  |
| ※시행일: 공포한 날<br>※영업신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시행일 전에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적용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조에 따르면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sup>1)</sup>,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는 현행법 제17조제1항 제1호 및 동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의 대상이 됨<sup>2)</sup>.

### 1)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영업의 신고)** ①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처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현행법 제5조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sup>3)</sup>

□ 이러한 영업신고 제한 제도는 「위생용품 관리법」 관련 규정<sup>4)</sup>의 위반으로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해당 영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재개하는 편법을 방지하고, 법률을 위반한 영업자로 하여금 2년간 같은 영업을 재개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영업소 폐쇄명령의 실효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5조, 제17조 |         |             |             |
| 가.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 영업소 폐쇄  |             |             |
| 나.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              | 시정명령    | 영업정지<br>1개월 | 영업정지<br>2개월 |

3) 제5조(영업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로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4)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① (생략)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4항에 따른 품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7.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8.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거·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성을 확보하고 불량 위생용품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영업부진,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소 시설물을 처분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까지 영업 신고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은 사업을 재개하려는 영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바,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사유로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영업신고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식품위생법」 제38조<sup>5)</sup>의 경우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영업허가 등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2020년 12월 개정되었음.

---

5) 「식품위생법」 (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2. 30 시행)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위생용품위생감시원 규정 등 정비

### 가. 개정안의 내용

- ‘위생용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명칭을 각각 ‘위생용품감시원’ 및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정비하고, 「식품위생법」 제3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 교육 등 관련 규정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위생용품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27조).

| 현행                                                                                                                                                                             | 개정안                                                                                                                          |
|--------------------------------------------------------------------------------------------------------------------------------------------------------------------------------|------------------------------------------------------------------------------------------------------------------------------|
| 제26조(위생용품위생감시원) 제14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위생용품감시원) -----<br>-----<br>-----<br>-----<br>-----<br>-- 위생용품감시원-----<br>-- . ----- 위생용품감시원----<br>-----<br>-----.      |
| 제27조(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용품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 제27조(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①<br>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용품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위생용품 |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3조  
를 준용한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  
람을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위  
생용품감시원(이하 “소비자위생용  
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 중인 위생용품의 표시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  
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2. 위생용품의 성분·용도·효과  
에 관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광  
고를 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3.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감시원  
이 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  
지원 업무

4. 그 밖에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  
비자위생용품감시원에게 직무 수

|                                                                                                                                                                                                       |                                                                                                                                                                                                                                                                                                                                                                                             |
|-------------------------------------------------------------------------------------------------------------------------------------------------------------------------------------------------------|---------------------------------------------------------------------------------------------------------------------------------------------------------------------------------------------------------------------------------------------------------------------------------------------------------------------------------------------------------------------------------------------|
|                                                                                                                                                                                                       | <p><u>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u>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해촉(解囑)하여야 한다.</u></p> <p><u>1. 추천한 소비자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u></p> <p><u>2. 제2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u></p> <p><u>3.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u></p> <p><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p>※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p> <p>※위생용품위생감시원 등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생용품위생감시원 또는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은 각각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생용품감시원 또는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봄</p> |                                                                                                                                                                                                                                                                                                                                                                                             |

## 나. 검토의견

□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은 식약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위생용품 영업장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및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은 표시기준 및 광고 규정 위반 위생용품의 신고 및 자료제공,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수거 업무의 지원 등을 위해 민간인 중 위촉하는 사람을 말함<sup>6)</sup>.

- '23년 말 기준 식약처 및 전국 지자체에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인 공무원은 591명이 임명되어 있고,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은 367명이 위촉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명칭 정비) 2018년 4월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시 「식품위생법」 제32조의 ‘식품’위생감시원을 차용하여 ‘위생용품’위생감시원으로, 「식품위생법」 제33조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차용하여 소비자 ‘위생용품’위생감시원으로 명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은 중복되는 ‘위생’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간결히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현 행          |   | 개 정 안      |
|--------------|---|------------|
| 위생용품위생감시원    | → | 위생용품감시원    |
|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   |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

### 6) 「위생용품 관리법」

제26조(위생용품위생감시원) 제14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용품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등 규정) 현행법 제27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용품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제33조7)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직무, 권한 남용 금지, 해촉 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소로의 출입 및 조사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이 식품접객업소 출입·조사 필요성이 적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에게 어떻게 준용되는 것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7)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2. 유통 중인 식품등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표시·광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3.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식품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해촉(解囑)하여야 한다.

1. 추천한 소비자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2항제1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려면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증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 권한남용의 금지, 교육, 해촉 요건 등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를 준용하지 않고 현행법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으로,

위생용품 관리 업무의 특성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법률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 「식품위생법」 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신설되는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요건 및 직무 규정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비교 >

| 구분 | 「식품위생법」에 따른<br>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에 따른<br>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
|----|-----------------------------------------------------------------------------------------------------------------------------------------------------------------------------------------------------------------------------------------------------------------------------------------------------|---------------------------------------------------------------------------------------------------------------------------------------------------------------------------------------------------------------------------------------------------------------|
| 요건 |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 직무 | 1.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br>2. 유통 중인 식품등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표시·광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br>3.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식품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br>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 유통 중인 위생용품의 표시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br>2. 위생용품의 성분·용도·효과에 관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br>3.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감시원이 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 지원 업무<br>4. 그 밖에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문 의 처

02)6788-5493